

정 관



무림P&P주식회사



서기 1974년 01월 16일 제정
서기 1985년 02월 23일 개정
서기 1987년 02월 24일 개정
서기 1988년 01월 22일 개정
서기 1988년 12월 28일 개정
서기 1989년 03월 30일 개정
서기 1989년 05월 23일 개정
서기 1991년 03월 16일 개정
서기 1993년 03월 27일 개정
서기 1996년 03월 16일 개정
서기 1998년 03월 21일 개정
서기 2006년 03월 13일 개정
서기 2008년 06월 10일 개정
서기 2009년 03월 18일 개정
서기 2009년 12월 17일 개정
서기 2011년 03월 16일 개정
서기 2012년 03월 22일 개정
서기 2013년 03월 21일 개정
서기 2017년 03월 23일 개정
서기 2019년 03월 27일 개정
서기 2021년 03월 25일 개정
서기 2022년 03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무림피앤피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Moorim P&P Co., Ltd.(약호 MPP)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학펄프와 동부산물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
3. 지류의 임가공 및 판매업
4. 무역업
5. 고지 판매업
6. 창고업
7. 인적 용역업
8. 유통업
9. 부동산임대업
10. 엔지니어링 사업
11. 환경사업
12. 산업설비공사업
13. 기계설비공사업
14. 전기공사업
15. 기타 화학제품 및 동부산물의 제조, 판매와 이와 관련되는 사업
16. 목재가공, 판매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17. 조림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
18.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19. 신재생에너지발전업
20. 전기판매, 열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업
21. 재생에너지 연료제조업
2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3. 펄프 몰드 등 친환경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24.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및 판매업
25. 셀룰로오스 소재 제조 및 판매업
26.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27. 전기 각호에 부대 관련된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제 3 조 (본점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울산광역시내에 두고 이사회 결의로서 필요한 곳에 지점, 사무소, 출장소, 분공장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orim.co.kr>)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자본, 주식 및 사채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500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 ①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제8조,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에 따라 발행할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 8 조 (제1종 종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1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하고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 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1 종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전환기간 내에서 1 종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전환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 종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가. 적대적 M&A 가 우려되는 경우

나.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경우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 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 1 주로 한다.

제 8 조의 2 (제2종 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2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2 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2 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한다.

② 2 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익배당률, 참가적인지 여부 또는 누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 8 조의 제 2 항을 준용한다.

③ 2 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2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하는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은 본조 제 3항 제 2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 3항 제 2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2. 주주는 2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상환가액은 본조 제 3항 제 1호를 준용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8 조의 3 (제 3종 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3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3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② 3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8조의 제 2항을 준용한다.

③ 3종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 8조의 제 5항부터 7항을 준용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 8 조의 2 제 3 항부터 4 항을 준용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당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할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당해 임,직원 또는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 30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또는 60 만주 중 적은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9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3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1 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1 조의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의 4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1 조의 5(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4 조 (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 그 밖에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개최한다.

제 16 조 (소집통지,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 (총회의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의장의 질서유지)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말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18 조의 3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18 조의 4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총회의 결의방법)

- ① 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이 주주인 경우,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제 22 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 ① 당 회사에 3명 이상 8명 이하의 이사를 두며 이들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한다.

제 23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4 조 (이사의 보선)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퇴직위로금, 공로금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26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회 결의로 약간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 명과 비상임이사 약간 명을 보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직무)

- ① 이사회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과 임원의 보직을 심의 결정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각자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의 2 (비등기임원)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③ 비등기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7 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이사회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날짜를 정하고 회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회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동의로서 결정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9 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제 30 조 (위임) 당 회사 업무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일상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게 위임 집행할 수 있다.

제 30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당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 31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 32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이사회를 소

집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제 3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그 사실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고문 및 지배인)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및 지배인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34 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주주의 열람을 위하여 제1항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이익금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37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제 37 조의 2 (분기배당)

-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가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 제8조의 2, 제8조의 3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세칙내규) 당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 칙(1985. 2. 23)

제 1 조 (시행일) 개정정관은 198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의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종전 정관에 의한다.

부 칙(1987. 2. 24)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8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개정 정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상법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병합이 종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22)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8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28)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8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개정 정관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상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이 종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30)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8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23)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8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3. 16)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9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3. 27)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9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3. 16)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9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1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1)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199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3)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0)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7)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6)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2)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1)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3)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7)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9조, 11조의4, 11조의5, 12조, 13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5)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3)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